

1. 수정이유

-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계획서 중 사업비 부분 중에서 수탁자가 일부 부담토록하여 시비를 줄이고,
-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협약서안 중에서 병원에 필요한 인력을 구미시 출신으로 우선채용하는 조건을 붙여 구미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함.

2. 수정 주요골자

-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계획서 사업비 부문 시비 중에서 수탁자가 **10억을 부담토록**하고,
- 위탁법인 공모 신청자격 중에서 의료법인의 민법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을 개설 할 수 있는자(단, **병원장은**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을 3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자)로 하며,
-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위탁운영 협약안 제10조 1항 끝에 “단, 병원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현재 구미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를 우선으로 채용하여야 한다.”를 추가함.

2. 수정 내용

-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계획서 사업비 부문 “시비 3,110백만원”을 “시비 2,110백만원, 자부담 1,000백만원”으로
- 위탁법인 공모 신청자격 세 번째 항 중에서 “단, 대표자는”를 “단, 병원장은”으로 하고,
-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위탁운영 협약안 제10조 1항 끝에 “(단, 병원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현재 구미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를 우선으로 채용하여야 한다.)”를 추가함.

구미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계획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구미시 관내(수탁자가 토지 기부채납)
- 사업규모 : 부지 5,000평 이상, 연건평 1,500평
- 병 상 수 : 150병상
- 사업기간 : 2005. 1 ~ 2007. 7월
- 사 업 비 : 6,510백만원(국비2,300, 도비1,100, 시비2,110, 자부담 1,000)

□ 위탁법인 공모

【 】

- 의료법인 (단, 법인의 대표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의료법인의 민법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을 개설 할 수 있는자(단, **병원장은**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을 3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자)

【 】

- 현행 건축법령에 의거 병원을 건축 할 수 있는 부지를 최소 5,000평이상 시에 기부채납 할 수 있는 의료법인
- 병원운영은 수탁자가 진료수입 등을 통하여 자비로 책임 운영
- 기타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조건 수용

【 】

- 공모방법 : 공개모집(위탁운영 시의회 동의 후)
- 공 고 : 시보, 시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
- 공고일자 : 2005. 7. . (20일간)

□ 선정위원회 구성

- 구성일자 : 2005. 8월중
- 구성인원 : 총 9명(시의원, 대학교수, 병원관련전문가, 공무원 등)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위탁운영 협약서안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 사무의 일부를 위수탁함에 있어 구미시장을 “갑”이라하고, ○○○를 “을”이라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구미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규모) 구미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위탁재산은 별지와 같다.

제3조(위탁운영) “갑”은 치매 및 노인질환관리를 위하여 설립한 병원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을”에게 “갑”소유의 재산 및 장비를 위탁하여 운영한다.

“을”은 병원 운영권 및 재산의 사용관리권을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없으며 수탁으로 인한 연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4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위탁기간 만료로 “을”이 재수탁하고자 할때는 기간만료 3개월 전에 수탁원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 제1항 규정에 의거 재 수탁원을 받은 “갑”은 재수탁 여부를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을”은 매년 병원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재산사용) “을”은 갑이 병원운영을 위하여 위탁한 시유 재산인 건물 등 시설물과 장비를 무상으로 사용하며, 사용재산 목록은 별지와 같다.

제7조(회계 및 결산) 병원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병원운영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며, 독립회계로서 별도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병원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은 병원운영 및 시설에 재 투자하여야 한다.

“을”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료수가) 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제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항목에 관한 의료수가는 관련법규 및 고시가격에 의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을”이 갑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9조(입원 등) 입원대상 환자는 구미시에 거주하는 자를 우선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사·도립치매요양병원설립운영지침(이하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이라 한다)의 입원대상자로 한다.

입원자에 대한 적정 요양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원자 정원을 초과해서 입원시켜서는 아니된다.

“을”은 전체 병상 중 의료보호 환자의 병상 비율은 30%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인력기준 및 장비 등) 의사 및 간호사 등 병원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의료법 및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맞게 배치 운영하여야 한다.

(단, 병원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현재 구미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를 우선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을”은 병원운영에 필요한 장비에 대하여는 의료법 및 보건복지부운영지침에 의한 장비기준(기본장비)을 준수하되 “갑”의 소유로 확보되지 않은 장비는 “을”이 이를 확보하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재산관리) “을”은 수탁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의 개·보수 등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을”은 수탁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병원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권 설정, 대여, 매매 또는 교환 할 수 없다.

“을”은 수탁기간중 신·증축, 원형변경 또는 멸실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였을 경우에도 확장 및 취득한 재산은 “갑”에게 귀속된다. 단, “을”이 제3자로부터 대여받은 재산 또는 시설 장비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을”은 수탁재산이 손상 또는 멸실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손해의 원인, 손해의 정도와 그 추정액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갑”은 제4항의 손해가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

하여 발생한 경우에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갑”은 병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을”의 병원운영 전반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운영 상황 전반에 관하여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 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을”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및 보험) “을” 또는 제3자가 수탁재산을 훼손·망실한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을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을”은 “갑”에게 금전적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갑”이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을”은 협약체결 후 지체없이 재해복구 및 변상대책으로 보험업에 의한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의 보험에 가입하고, 아울러 “갑”과 “을”의 협약내용을 공증하여 보험가입서 사본 및 공증서 원본을 협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의 해지)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코자 할 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다.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은 이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
2. 이 협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
3. 공익을 위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을 때

“갑”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 할 때에는 60일전에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공익상 긴급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 되었을때에는 계약과기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익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5조(청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 되었을 때에는 “을”은 수탁재산 및 관리운영권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준수의무 등) “갑”과 “을”은 이 계약을 준수하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료법 등 관계법령, 자치법규 및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그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도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7조(계약내용의 변경)이 계약은 관계 법령의 제개정, 공익상 필요성, 기타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갑”과 “을”이 협의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제18조(효력)이 계약의 효력은 공증을 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제19조(계약서 작성 및 보관)이 협약서 체결을 입증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공증용으로 한다.

2005년 월 일

갑 : 구 미 시 장 김 관 용 (직인)

을 : ○ ○ ○ ○ 대표 ○ ○ ○ (인)

붙 임 :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위탁 및 사용재산 목록 1부

【 별 지 】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위탁 및 사용재산 목록

1. 토 지

		(㎡)	

2. 건 물

		(㎡)		

3. 의료장비

보건복지부 사·도립 치매요양병원설립·운영지침상의 기본장비 및 수탁자 기부
채납 장비

당초(안)	수정(안)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계획서】 < 사업개요 > 사업비 : 6,510백만원(국비2,300, 도비1,100, <u>시비3,110</u>) < 신청자격 > 의료법인외 민법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을 개설 할 수 있는자(단, <u>대표자는</u>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을 3년이상 운영경력이 있는자)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위탁운영 협약서안】 제10조(인력기준 및 장비 등)①의사 및 간호사 등 병원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의료법 및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맞게 배치 운영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② (생략)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계획서】 < 사업개요 > 사업비 : 6,510백만원(국비2,300, 도비1,100, <u>시비2,3110, 자부담 1,000</u>) < 신청자격 > 의료법인외 민법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을 개설 할 수 있는자(단, <u>병원장은</u>-----)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위탁운영 협약서안】 제10조(인력기준 및 장비 등)①의사 및 간호사 등 병원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의료법 및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맞게 배치 운영하여야 한다. <u>(단, 병원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소정의 자격을 갖춘자로서, 현재 구미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를 우선으로 채용하여야 한다.)</u> ② (현행과 같음)